

●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19-4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 위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월 28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대상 : 주식회사 조*은만남솔루션 등 10명

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4. 의견제출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의견제출장소 :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(☎ 02-6735-8133 / FAX 02-6735-8144 / E-mail :hsham0302@korea.kr)

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

번호	대상자	주민등록번호/ 법인등록번호	고지주소	법령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	스팸URL 전화번호	광고 내용
1	주식회사 조*은만남솔루션	285011 -0*****	서울시 강남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	15,000,000	060-***9-0097	성인
2	(주)서*	280111 -0*****	경기도 의정부시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	7,500,000	070-***39-2748	핸드폰 가입
3	김*수	720820 -1*****	서울시 성동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	3,750,000	02-***5-3031	해외 골프여행
4	주식회사 스*일투자그룹	110111 -6*****	서울시 강남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2-***56-8855	주식
5	유한회사 류*스톡	110114 -0*****	서울시 강남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	15,000,000	070-***33-6594	주식
6	이*람	871127 -2*****	서울시 강남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	3,750,000	010-***16-3122	컨설팅
7	박*진	770225 -1*****	서울시 강서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8항	7,500,000	***125.co.kr	국악
8	정*원	740116 -1*****	경기도 시흥시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	3,750,000	02-***39-9559	교육
9	하*호	760325 -1*****	서울시 용산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2-***56-3820	주식
10	이*관	791212 -1*****	서울시 양천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	7,500,000	***88-3800	대리전